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10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7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초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4. 20.

##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7일 등』 처분을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3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7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I. 사건개요

- 가. 인천□□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청구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은 같은 교내 풍물부 동아리원으로, 2019. 10. 24. 오후 1시 40분경 동아리 시간에 청구인이 매트 위에 앉아 있는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몇 번 비키라고 했으나 피해학생은 이를 무시하고 비켜주지 않자 두 학생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때렸고, 그 후 피해학생이 화장실을 가자 청구인이 따라가 소변을 보는 피해학생을 때리고 피해학생이 손을 씻을 때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 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전치 2주 상당의 상해 및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 나.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2019. 10. 25. 이 사건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19. 11.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6-99호)에 따라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3점(높음), 학교폭력의 지속성 2점(보통), 학교폭력의 고의성 3점(높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1점(높음), 화해 정도 3점(낮음)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점수 합계 12점에 해당하는 조치로 ‘제6호 출석정지’ 및 가해학생에 대한 병과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1. 11. 청구인에게 『제6호 출석정지 7일,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11. 18.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 31. 본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의 심각성(3점, 높음) 판정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과장되었으며,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어서 피청구인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한 것이다.
- 나. 학교폭력의 지속성(2점, 보통) 판정에 대하여, 이 사건은 평소 3학년 학생들이 상급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 등으로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도 아니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님에도 지속성을 보통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 다. 학교폭력의 고의성(3점, 높음) 판정에 대하여, 최초 시비의 발단은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도발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고의성이 높다고 판정하는 것은 과중하게 판단한 것이다.
- 라. 가해학생의 화해정도(3점, 낮음) 판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못 한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으로서 보호자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유도하거나 조정할 의무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청구인에게 화해의 노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 없는지 모색함이 없이 서면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7일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피해학생 보호자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등교를 오전 8시 30분 이후에 하도록

하고, 학교도서관 출입을 금지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판정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목격 학생의 진술, 사안조사 과정 및 자치위원회에서도 확인이 되었으며,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사안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을 한 바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게 만든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 나. 학교폭력의 지속성 판정에 대하여 피해 학생 외 다른 품물부 학생들의 진술에서 4학년인 청구인이 동아리 활동 시 3학년 학생들에게 거칠게 말을 하거나 때렸다는 진술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다. 학교폭력의 고의성 판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동이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학생과 다른 품물부 학생의 확인서를 참고하면 청구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비키라고 했으며,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행동에 대해 부당함을 얘기한 것이지 매트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말을 듣지 않고 화장실로 가버리자 청구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고의성 정도를 판단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라. 가해학생의 화해정도 판정에 대하여 사건 당일 보호자들 간의 만남 이후 피청구인이 양쪽의 만남을 주선하려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지 않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청구

인이 취할 방법이 제약적이었던 것이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마. 등교 시간대 및 도서관 출입 시간대 조정은 처분 조치 중 제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에 따른 것으로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접촉하지 않게 하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이었으며, 피해학생 및 청구인 측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대를 조율한 것이며, 피해학생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청구인과 아무런 논의 없이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 단

######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보충서면과 제출된 증거 포함)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그리고 본 건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 사건개요’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먼저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의 발생 제반 경위, 이 사건 발생 이후 사안조사 과정, 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어떠한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 측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2) 다음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 결의를 위해 그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풍물동아리 지도교사 역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한 이후의 피해학생 및 다른 풍물부 학생의 진술만으로 지속성 요소를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 3) 다만 이러한 지속성 요소의 판단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는 ‘2점, 보통’을 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지속성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판정점수는 10점으로서 여전히 출석정지 처분의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이 서면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행위의 발생 경위, 청구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건 발생 이후 청구인의 태도 등을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7일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의 다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출석정지 7일 처분만을 취소하고, 대신에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명하는 것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사건 학교 측에서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등교 시간제한 및 학교 내 도서관 출입금지를 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접촉금지처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하지만, 그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위원회에서 접촉금지의 범위가 결정되어 그러한 내용이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내용의 자치위원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 혹은 통상적인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겹치는 학생들의 동선까지 제한하는 조치일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면적인 학교 시설물의 이용 제한이나 일방적인 등하교 시간의 제한을 하는 조치로서 문제의 소지(학습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가급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의 이러한 조치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이후에 내린 별개의 행위로서 본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첨언을 하는 것임]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